



2013년도 대한민국 우수숙련기술인 등 선정계획 공고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대한민국명장,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구 분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장려법 제10조)	숙련기술전수자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숙련기술장려법 제16조)
접수(신청)기간	2013. 3. 25(월) - 4. 26(금)			
선정분야 및 직종	22개분야 96개직종		금형 등 18개직종	대기업 및 중소기업 부문(별도심사)
선정인원(사업체)	35명 이내	50명 이내	10명 이내	5개 업체 이내
신청자격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서 접수개시일 현재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로서 숙련 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 자	산업 현장에서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서 접수개시일 현재 7년 이상 생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기업체 대표자	접수개시일 현재 선정대상 직종(보유기능)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최고수준의 숙련 기술자 중 기술전수를 위한 시설·장비, 전수계획, 전수대상자를 확보한 자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접수 개시일 현재 개업연수가 3년 이상 경과하고 과거 모범 사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없거나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업체
우대사항	①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휘장 수여 ② 대한민국명장패 수여 ③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시장려금 2,000만원 지급 및 매년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등	① 우수 숙련기술자 증서 수여 ② 일시장려금 200만원 지급 ③ 대학 입학지원금 지급(예산범위내) ④ 우수숙련기술자를 2인 이상 배출하고 선정 다음 연도 1년간 퇴직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① 숙련기술전수자 증서 및 흉장 수여 ② 숙련기술전수자 명판 수여 ③ 전수지원금 지급(5년 이내) - 전수자 월80만원, 전수대상자 월20만원	①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인증서 및 명판 수여 ② 선정 후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③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신청시 가점부여 ④ 중소기업의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 신청시 가점부여 ⑤ 산업현장교수단을 활용한 HRD종합서비스 우선 지원 ⑥ 언론보도
사업설명회	2013. 3. 29(금) 14:00. 공단본부	-	-	-
선정자 발표	2013. 8월 중			

※ 자세한 사항은 ①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 소식공간 → “사이버홍보실”, “알려드립니다” 또는 ②우수숙련기술인 종합정보망(<http://pool.hrdkorea.or.kr>) 열린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추진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